



지구 선거절차

➤ 지구대회: 일정

- ✓ 지구 연차대회는 국제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종료한다. (표준 지구 헌장 제7조 1항 참조)
- ✓ 지구총재는 지구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각 클럽에 공식 통고를 공표해야 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6조 2항 참조)
- ✓ 각 지구 지명위원회를 지구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구성해야 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2조 1항 참조)
- ✓ 지구 사무총장은 각 단일 및 정지구 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완성된 회의록 사본을 국제본부에 제출해야 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6조 6항 참조)

➤ 지구대회: 장소

- ✓ 개최지는 전년도 연차대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결정된다. (표준 지구 헌장 제7조 1항 참조)
- ✓ 지구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여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, 지구대회를 지구 경계선 밖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다.
- ✓ 지구임원회는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로 대회 개최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6조 3항 참조)
- ✓ 장소 변경 공고는 연차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지구 내 각 클럽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6조 3항 참조)

➤ 대회 의사규칙

- ✓ 지구총재가 지구대회의 진행순서를 결정하며, 모든 행사의 당일 순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6조 8항 참조)
- ✓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수를 자격증명 종료 시간 및 투표 시작 전에 공고해야 한다. (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3규정 참조)
- ✓ 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가 대회의 모든 회의에서 정족수가 된다. (표준 지구 헌장 제7조 3항 참조)

➤ 대의원

(국제 부칙 제9조 3항 참조)

- ✓ 협회와 소속 지구(단일, 정 및 복합)에서 굿 스탠딩 상태인 클럽은 임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 당 그리고 그 나머지가 과반수(5명)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 1명과 교체대의원 1명씩을 소속 지구의 연차대회에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.

- ✓ 직접 출석하여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은 각 연차대회에서 임원 선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인의 선택대로 1표씩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.
- ✓ 유자격 대의원은 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굿 스탠딩 회원이어야 한다.
- ✓ 미납금을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15일 전까지 완납하면 굿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.
- ✓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교체에 관한 조항은 **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5규정을 참조한다.**

➤ 위원회

지명위원회

- ✓ 각 위원은 지구의 각기 다른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이어야 하며, 임명된 기간 동안 어떠한 지구임원이나 국제임원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. (**표준 지구 부칙 제2조 1항 참조**)
- ✓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(**표준 지구 부칙 제2조 1항 참조**)
- ✓ 선거 전 30일 이내에 지명된 각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. (**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4(a)참조**)
- ✓ 지구총재,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전에 각 입후보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(**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D, E, F 참조**)

자격증명위원회

- ✓ 지구총재가 위원장이며, 지구 사무총장, 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, 지구총재가 임명한 지구임원이 아닌 회원 2명으로 구성된다. (**표준 지구 부칙 제6조 7항 참조**)
- ✓ 각 회원은 지구의 각기 다른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이어야 하며, 임명된 기간 동안 어떠한 지구임원이나 국제임원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. (**표준 지구 부칙 제6조 7항 참조**)
- ✓ 클럽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. (**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3규정 참조**)

선거위원회

(**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7규정 참조**)

- ✓ 지구총재가 임명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✓ 선거 자료 준비, 투표 일람표, 개별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있다.
- ✓ 종합적인 선거 결과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.

➤ 후보자 자격

- ✓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국제 부칙 제9조 4항에 규정되어 있다.
- ✓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국제 부칙 제9조 6항에 규정되어 있다.
- ✓ 후보자는 지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전에 언제든지 입후보를 철회할 수 있다. (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4(b) 참조)

➤ 투표

(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A 제8규정 참조)

- ✓ 선거는 비밀 서면 투표로 실시되며, 후보자는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. (표준 지구 부칙 제2조 4항 참조)
- ✓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된다.
- ✓ 지구총재,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, 공석으로 남게 되며 국제 부칙 제9조 6(d)항을 적용한다.

➤ 투표용지

(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, 첨부 G 참조)

- ✓ 후보가 2명일 경우, 첨부 G 예시 1의 투표용지를 참조한다.
- ✓ 단일 후보일 경우, 첨부 G 예시 2의 투표용지를 참조한다.
- ✓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, 첨부 G 예시 3의 투표용지를 참조한다.
- ✓ 대회 임원은 투표용지에 기입할 적절한 기호 또는 승인된 투표도장을 지정한다. 적절한 위치에 기호나 승인된 투표도장으로 기표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.
- ✓ 후보자는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표해야만 선출될 수 있다.